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1

( 2014. 4.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이 진 표 ]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3월 21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4년 3월 25일

## **4. 관련근거**

- 「지방차지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5. 개정이유**

-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6.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소독업에 관한 사무 등」과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사무 등」을 위임 사무에 신설
- 상위법령의 개정 및 「기생충질환예방법」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

## 7. 검토결과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수리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등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검진 및 치료 등에 관한 사무」와 「모자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및 「약사법」 제44조의2 등의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 셋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 사무」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던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를 삭제하며
- 넷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내용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노인복지법」을 「기초노령 연금법」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기타 「의료법」, 「약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사무위임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

## 관련 법령 및 근거

### [ 지방자치법 ]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검진)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미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미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험량, 제형,

인자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4.]

### 의료급여법(2013. 6. 12. 일부개정)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